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460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1.

발 의 자:남인순·김남근・임미애

김 윤 · 서미화 · 이재정

김성환 • 전진숙 • 백혜련

김영배 · 민병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」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 이에 현행법에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별표 1 제24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45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24. 「인구정책기본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